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유정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1일

발 의 자: 유정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성준, 김인제, 박강산,
박유진, 봉양순, 송도호,
송재혁, 아이수루, 우형찬,
, 이병도, 이상훈, 이영실,
이용균, 임종국, 전병주,
정준호, 최재란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2016년 서울역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 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「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」를 폐지함과 동시에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.
- 그러나 동 조례는 건립 추진 중인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근거와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, 박물관 자료 수집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. 이에 자료 구입 및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해 유물 등 소장품 확보에 있어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자료 구입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(안 제3조의2).
- 나. 박물관 기증 자료 수증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(안 제4조의2).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문화재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자료 구입의 제한)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.

1.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
2. 도난이나 도굴,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
3.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

제4조의2(자료 기증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소장경위나 출처,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
2.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의2(자료 구입의 제한) 시장</u> <u>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</u> <u>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</u> <u>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</u> <u>하지 않은 경우</u> <u>2. 도난이나 도굴, 밀반입 등 불</u> <u>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</u> <u>우</u> <u>3.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</u> <u>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</u> <u>로 판단될 경우</u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의2(자료 기증의 제한) 시장</u> <u>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</u> <u>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</u> <u>증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소장경위나 출처, 소유권 등</u> <u>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</u> <u>여지가 현저한 경우</u> <u>2.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</u> <u>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</u> <u>다고 판단될 경우</u>

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.

문서번호

202310100000000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유정희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0.

회신일 : 2023.10.1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2(자료 구입의 제한), 제4조의2(자료 기증의 제한)를 신설하여 자료 구입 및 기증의 제한과 제5조(자료의 기탁 등)제3항 기탁받을 자료의 수탁 예외를 규정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